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및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안내 -

- (1) 본회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건의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시행 '17. 2. 10일부)
- (2) 고용노동부에서 성장유망업종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시행 '17. 8. 17일부)

1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 안내

○ 숙식비 사전공제 방법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정보 기재
- 근로자의 이해 도모를 위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공제)동의서* 작성
 - * 각국 언어별(15개국) 공제동의서 서식
(중소기업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 정보광장/공지사항 내 등록 파일 참조)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 인정

○ 숙식비 징수 상한액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 가스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은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

○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

※ 세부내용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02)2124-3281, 3284

②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이란?

- 성장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업종은?

- 모든 업종 지원이 아니고, 아래의 업종 해당 시 지원 가능
- * (업종확인방법) :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및 기업의 주요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

테 마(9개)	분 야(45개)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저탄소 동력장치(4)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고부가 표면처리, 바이오 소재, 융복합섬유, 다기능소재(5)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4)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3)
건강·진단	생체조직 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유전자연구 고도화, 첨단 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9)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 컴퓨팅,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 강화, 지능형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6)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차세대 컴퓨팅(5)
센서·측정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 측정(3)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 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6)

○ 지원 요건 및 내용은?

- (요 건) 만 15~34세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
- (내 용) 한 명분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 3명당 1명 인건비 지원이며, 총 9명을 채용하는 경우 3명까지 지원

○ 신청 방법은?

-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은?

- 2017. 8. 17 ~ 9. 7 (단, 온라인 신청은 2017. 8. 28 이후부터 가능)

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서체' 탄생!

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고딕·명조)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www.kbiz.or.kr